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,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신동아학원(전주대학교, 산학협력단)의 2017 회계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학교법인 신동아학원(전주대학교, 산학협력단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지적사항 없음			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지적사항 없음			
3. 학교 관련	지적사항 없음			
4. 산학협력단 관련	지적사항 없음			
계	지적사항 없음			

붙임 1.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2. 전주대학교, 산학협력단 감사지적사항 및 지정 조치계획

2018. 5. .

학교법인 신 동 아 학 원

감 사 이 [illegible] 인

감 사 [illegible] 인

피감사 기관장

2018. 5. .

학교법인 신동아학원

이 사 장 홍 정 길

피감사 기관장

2018. 5. .

전주대학교

총 장 이 호 인

산학협력단

단 장 변 주 승